

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가. 2005. 4. 1자 직제개편에 따라 보건소에서 처리하던 식품위생 업무가 사회산업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변경하고 간사의 명칭을 수정하며,
- 나.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

2. 관련법령

「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」 및
「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」

3. 주요골자

- 가.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중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하고, 간사의 명칭을 “식품위생업무담당 주사”로 수정함(안 제3조제3항 및 동조제6항)
- 나. 회계관계공무원중 기금출납명령관은 보건소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하고, 기금출납 공무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로 명칭 수정(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)

4. 검토의견

본조례 개정건은

- 지난 2005. 4. 1 사하구 직제개편과 관련 식품위생업무가 보건소에서 사회산업국(환경위생과)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변경내용을 직제에 맞게 적의 조정함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
- 특히 직제개편과 기금의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 명문화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위 조례 개정은 적법타당 하다고 사료됨